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



이 해설서는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에서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에 관하여 어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CONTENTS •

01	1. 개요	1
	1.1. 배경 및 목적	2
	1.2. 주요 구성	3
02	2. 기본 절차와 용어 이해	5
	2.1. 사업의 추진 방식	6
	2.2. 민관협의회 필요성과 역할	14
03	3. 효과적인 민관협의회 기획과 운영	21
	3.1. 민관협의회 구성	22
	3.2. 민관협의회 운영	32
	3.3. 협의 역량 강화	38
04	부록.	41
	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42
	2.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예시)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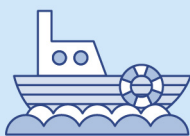


01

개요

1.1. 배경 및 목적

1.2. 주요 구성



개요

1.1. 배경 및 목적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풍력발전을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기존 어업활동 공간의 위축과 함께 조업 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많은 어업인들이 조업경비 증가 및 위험도 상승 등 어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우려하며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유럽 등 해외 주요 해상풍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해양공간계획제도 등을 통해 어업영향이나 국방, 선박통항 등 기존의 해역이용 현황과 수요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가 직접 해상풍력단지의 입지를 발굴해 왔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별 사업자들이 입지를 발굴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입지 발굴시 어업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요 조업어장에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업인과의 갈등이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20년 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그간 해상풍력 추진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정부 주도 입지 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강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입지와 수용성 관련 대책으로서 정부 주도로 입지정보도를 구축하여 어업영향이 적고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집적화단지 제도를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219호)」(이하 ‘집적화단지 지침’)에서는 지구별 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협중앙회로부터 조업정보를 받아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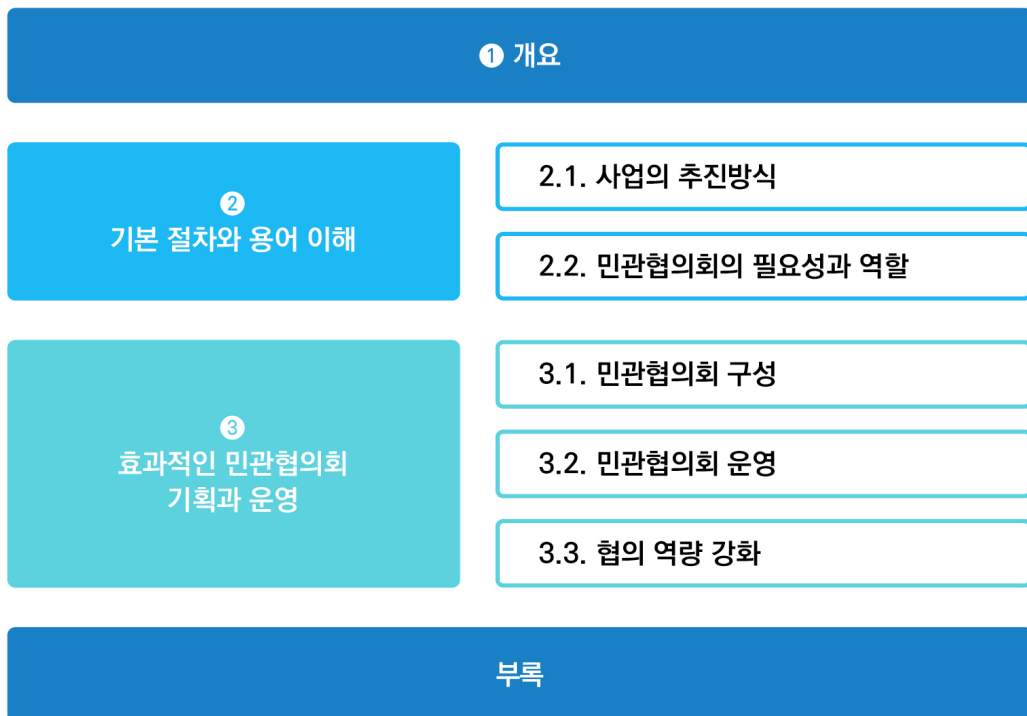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나, 어떻게 민관협의회가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며 어떤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참여하는 어업인뿐 아니라 지자체 또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경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민관협의회 제도를 이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원하는 바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이번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2. 주요 구성

이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해상풍력사업의 추진 절차와 민관협의회 제도, ‘공모’, ‘집적화단지’ 등 관련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특히 민관협의회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기존의 상황과 변화하고 있는 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3장에서는 민관협의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실제 운영에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은지 알아봅니다. 참여자 구성부터 협의에 필요한 규정 마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부록에는 ‘집적화단지 지침’과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예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해설서의 주요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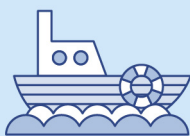


02

기본 절차와 용어 이해

2.1. 사업의 추진방식

2.2. 민관협회의회의 필요성과 역할



기본 절차와 용어 이해

2.1. 사업의 추진방식

“해상풍력, 시대 상황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우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절에서는 공공주도 추진방식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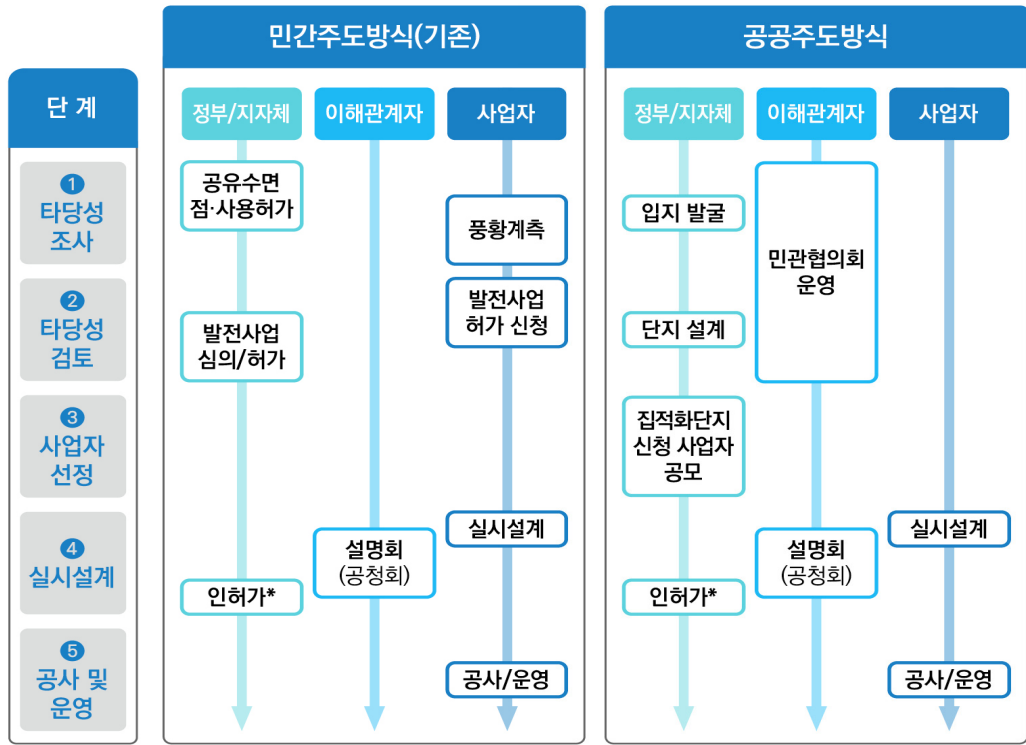
● 공공주도 사업이 무엇입니까?

⇒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초기 계획 수립부터 발전단지 공사 및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형태를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 사업 초기에 수용성과 경제성,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그럼 기존 사업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 기존 추진방식에서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 및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정부나 지자체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소극적으로 인허가를 하는 역할만 담당했습니다.
-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부족 및 뒤늦은 협의, 실제 사업의사가 없는 소위 가성 사업자 난립 및 인허가 남발, 보상 관련 유언비어 등으로 지역 갈등의 심화, 사업추진 지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초기부터 입지를 계획하여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까지 확보한 후, 확보된 부지에 대해 입찰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어업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덴마크,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제도로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다음 단계도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주도 방식은 초기단계에는 민관협회의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후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시설계단계 인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해상), 개발행위허가(육상), 공사계획인가
[기존 민간주도 방식과 공공주도 방식 간 차이]

● 다른 분야 공공사업도 민관협의회 이야기는 그동안 많았는데 과거 사례를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무엇이 다른니까?

⇒ 사업의 직접 추진 여부가 다릅니다. 도시 개발이나 인프라 건설 등 다른 분야 공공사업에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주체가 사업을 직접 추진해왔습니다. 소위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들로서 어업인들이 많이 접해본 항만 건설이나 해상교량 그리고 연안의 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그 예입니다.

- 그러나 해상풍력 분야 ‘공공주도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는 계획을 수립 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는 역할이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입지와 규모,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력합니다. 실제 사업 추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입찰 조건을 준수하며 시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사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 ‘민관협의회’ 앞에 ‘집적화단지’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용어라서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 ‘집적화단지’라는 용어는 무슨 뜻입니까?

⇒ 신·재생에너지를 집단으로 설치 운영하는 발전단지를 의미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집적화단지’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집적화단지의 조성 주체로 지자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존과 달리 집적화단지를 만들면 우리 어업인들에게 어떤 점이 좋습니까?

⇒ 절차 측면에서 참여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적화단지 지침’은 민관협의회의 구성(제5조)과 운영(제5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제6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존의 사업설계 단계가 아닌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어업인과 주민이 직접 입지와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집적화단지의 추진(신청) 여부를 민관협의회가 정합니다.** ‘집적화단지 지침’은 집적화단지의 입지요건(제4조제3항)으로 △적합한 풍력 자원의 보유, △전원(電源)개발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을 것,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가능할 것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을 제시하며 이러한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적화단지 지침’은 집적화단지의 입지와 사업계획 그리고 계통연계방안까지 다양한 사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실시기관인 지자체가 입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입지를 제시하거나 수용성 확보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 민관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나 보완방안 및 대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완이나 대안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관협의회가 “집적화단지 추진안건”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시기관인 지자체는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민관협의회 협의를 완료하고 결과가 반영된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관협회에 참여하는 어업인대표들은 입지와 수용성 전반에 대해 입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익 공유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주도하여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일정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가중치와 별도로 정부가 신·재생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산정¹⁾ 시 우대가중치를 0.1 범위까지

1)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해상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량에 발전원별 가중치를 곱한 양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됩니다. 이때 지자체 주도형 집적화단지는 기존 가중치에 추가로 우대 가중치 최대 0.1까지 산정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REC는 다시 RPS 시장에서 거래되어 수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집적화단지 지침’ 제10조 제4항). 해상풍력의 0.1 REC의 가치는 유동적이지만 1메가와트(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입니다.

* REC수익은 발전량(MWH)에 따라 산정되며 해상풍력 이용률 30%, 1REC단가 6만원 /MWH을 가정하여 추산한 값으로 실제로는 이용률이나 REC가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우대가중치로 환산된 지원금은 집적화단지 조성 이후 발전소 운영기간(평균 20년 이상)동안 계속하여 지자체로 바로 지급되며 어업인과 주민이 원하는 상생계획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주도형 REC 우대가중치 부여 기준]

평가 항목	가중치
지역주민·어업인 등 수용성 확보	0.04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0.02
사업시행자 공모 여부	0.01
사업기간	0.01 ~ 0.03
합 계	최대 0.10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 2]

다. 공공주도 사업에서는 사업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고 공모로 선정합니다.

- “우리 어민의 주요 조업어장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다, 풍력발전기를 세운다.”라고 논란이 많아서 골치가 아픕니다. 사업자를 나중에 뽑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네. 기존에는 산업부가 정한 풍황계측기 부지중복 기준에 따라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상풍력 사업입지와 어업인들의 조업어장이 겹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이미 조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입지를 양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인 발전사업자 측에 지역 어업인들이 입지 조정을 요구하자 담당자가 “입지를 양보해 줄 경우 사업 입지를 정한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배임)을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어업인들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 공공주도 사업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입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하면서 반대가 적은 입지를 선택하고 또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적합한 입지가 한 군데도 없다면 새로이 입지와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공간을 사전에 피함으로써 초기에 입지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어업인 입장에서 어업영향이 적은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업자 공모방식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까?

⇒ 물론입니다. 우선 향후 공모 단계에서 어업인분들이 하나의 사업자의 제안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의 제안을 비교하게 되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지역 상생계획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공모절차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집적화단지 지침’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면 REC 우대가중치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사업시행자 공모 여부(0.01)’를 만족하여 가중치가 높아지고, 추가 산정된 REC를 재원으로 지역 상생방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2. 민관협의회 필요성과 역할

“사업자와 따로 협의해도 되는데
왜 민관협의회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나까?

이 절에서는 민관협의회 필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민관협의회가 왜 필요한지 다들 궁금해 합니다.

● 기존에도 협의방식이 있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기존의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의견수렴 절차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진행되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설명회와 공청회의 운영방식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뒤늦은 협의 시점과 형식적 운영**입니다.

⇒ **첫 번째는 협의를 너무 늦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이미 결정되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설명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협의 시점 자체가 상당히 늦다보니 해상풍력단지 입지는 이미 결정되어 사업자는 수십, 수백억을 투입해온 상황이며, 어업인과 주민이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입지나 환경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사실상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두 번째는 협의 방식이 형식적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가 이미 발급된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와 소통에 나설 유인 기제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 섞인 우려가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공청회를 주민이나 어업인들이 무산시킨 경우에도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도 설명회와 공청회의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회는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소통과 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집적화단지 관련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민관협의회가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민관협의회가 개별 어업인과 지자체 등 계획 수립 주체와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고,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관협의회가 잘 운영되면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상풍력 기술, 이익공유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정보가 민관협의회 내에서 공유되고, 다시 민관협의회 위원들에서 지역사회 어업인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파될 수 있습니다.

나. 과거와 달리 민간사업자가 먼저 개별적으로 만나서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면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금전적 지원과 보상을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 그래도 우리지역에서는 민관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까?

⇒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관례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어업인들이나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동의서나 위임장에 서명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부의 어업인 간,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협의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사업자가 인허가 시 직접적 이해당사자보다는 일부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원금 조건을 제안하고, 동의서나 위임장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입장을 가진 일부 주민들로부터 징구된 동의서들이 지역 전체 수용성 확보자료로 활용되다 보니, 사업자에 대한 불신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둘째, 금품 제공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동의서 수령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도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또는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 셋째, 동의서를 작성할 때 들었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될지 불확실합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동의서 내용은 통상 특정 인허가 단계에 대한 동의가 아닌 ‘사업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서명 한 번으로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되는 해상풍력 사업 전체를 동의하는 형태이다 보니,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의서로 인해 이미 주민과 어업인의 협상력이 상실된 상

태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갑과 을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협의와 문서화를 거치지 않은 이면의 지원 조건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혹은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 기존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 ⇒ 민관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공개된 방식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개별 접촉에 따라 발생할 갈등과 불확실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구성한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당사자로서 **대표성**을 가진 민관협의회가 **공개된 방식**으로 사업의 입지와 규모,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초기부터 결정하게 됩니다.

다. 과거 개발사업처럼 민관협의회가 있더라도 실제 문제가 있는 사업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민관협회의의 운영 취지는 좋은데, 어업인들이 반대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밀어 붙이면 민관협의회가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까?
- ⇒ 기존 공공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설계단계에서 지역의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이 매우 부실했습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어업인을 포함한 민관협의회에서 입지와 환경 그리고 수용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민관협의회는 구성과정에서 어업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많습니다.**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민간이 추천하는 공익위원의 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설사 지자체가 형식적으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위원들에게 빠른 협의를 종용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민관협의회는 집적화단지 평가와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낸다면 협의 결과에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어업인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민관협의회 운영이 필요합니다. ‘집적화단지 지침’에서도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의2 제7항).**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7항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항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 그렇다면 민관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입니까?

- ⇒ 정확히 이야기하면, “집적화단지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계획 및 입지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입니다.

●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민관협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 ⇒ 계획절차 상 민관협의회가 설치되는 시점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의 가장 초기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발전사업허가를 승인하는 전기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검증하였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 검증을 어업인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개별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검토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 ‘집적화단지 지침’에서는 민관협의회의 구체적인 협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제5조의2). 구체적으로 입지, 이익공유 방안, 환경 조건 등의 사항입니다.
- 특히 입지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작성한 사업계획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해양입지컨설팅 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사전 입지컨설팅” 자료를 통해 해상풍력 예정 입지의 어업영향,

주요 조업업종과 소속 수협, 해상교통 영향 여부, 환경 영향 여부 그리고 군 작전성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정보와 교차 검증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단 계	민간주도방식(기존)	공공주도방식
① 타당성 조사	사업자가 조사	정부/지자체가 조사
② 타당성 검토	전기위원회가 검증	민관협의회가 검증
③ 사업자 선정	발전사업허가	집적화단지 신청 사업자 공모
④ 실시설계	설명회 의견수렴	설명회 의견수렴
⑤ 공사 및 운영	사업자 착공/운영	사업자 착공/운영

[추진 방식별 타당성 조사와 검증 주체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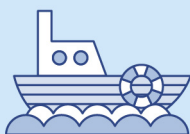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1항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 연계방안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라 한다)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3

효과적인 민관협의회 기획과 운영

- 3.1. 민관협의회 구성
- 3.2. 민관협의회 운영
- 3.3. 협의 역량 강화



효과적인 민관협의회 기획과 운영

3.1. 민관협의회 구성

“민관협의회가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이 절에서는 민관협의회 참여 주체와 범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민관협의회를 만든다면, 누구와 논의하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누가 민관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 민관협의회(民官協議會)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민측 대표와 관측 대표가 모여서 협의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 ‘집적화단지 지침’의 규정에 따라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민간 위원으로, 지자체 관계자 등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사업이나 갈등관리 등의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민간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에너지산업, 환경, 해양수산 등 사업계획 관련 부서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 어업인들 중에서는 누가 민간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집적화단지 지침’에서는 해상풍력사업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구별·업종별 수협과 어업인 단체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집적화단지 실시기관인 지자체는 수협중앙회에 사업예정 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수협중앙회는 ‘집적화단지 지침’에 따라 주요 조업업종이 소속된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정보와 주요 조업업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해당 수협과 협의하여 관련 수협과 필요시 주요 조업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어업인 단체 참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어업인대표로 참여하는 수협과 어업인 단체를 확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이 민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제4항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실시기관은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1.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2.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 정부나 어업인들 외에도 민관협의회 구성에 포함될 사람들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부와 어업인, 주민 외 다른 주체는 해상풍력 제도, 기술,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 전문가들은 공익위원으로서 때때로 전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간 협의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적화단지 지침’ 제5조 제3항에서 민관협의회 참여 주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3. 공익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4. 공익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절반씩 추천한다.
5. 민관협의회는 운영과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2호의 민간위원 수 및 제4호의 민간위원이 추천한 공익위원 수의 합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나. 우리 지역에서는 해상풍력이 이슈화되어서 관심있는 단체들이 많고, 다들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 어업인그룹에서는 지역 수협이 여러 개가 있고, 어촌계, 조업업종별 협회 등 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모든 단체가 민관협의회에 들어오면 일견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운영단계에서는 효과적으로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적화단지 지침’에서도 참여 인원은 20여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첫 번째, **위원이 너무 많으면**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워 협의체를 구성해도 회의 자체를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한정된 회의 시간에 모든 참석자가 충분히 발언하고 토의하기가 어려워 의사 진행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안으로서 민관협의회 하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 외에 모든 단체가 참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촌계와 어선어업인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 어선어업인들만 따로 분과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각 분과에서 선출된 대표를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분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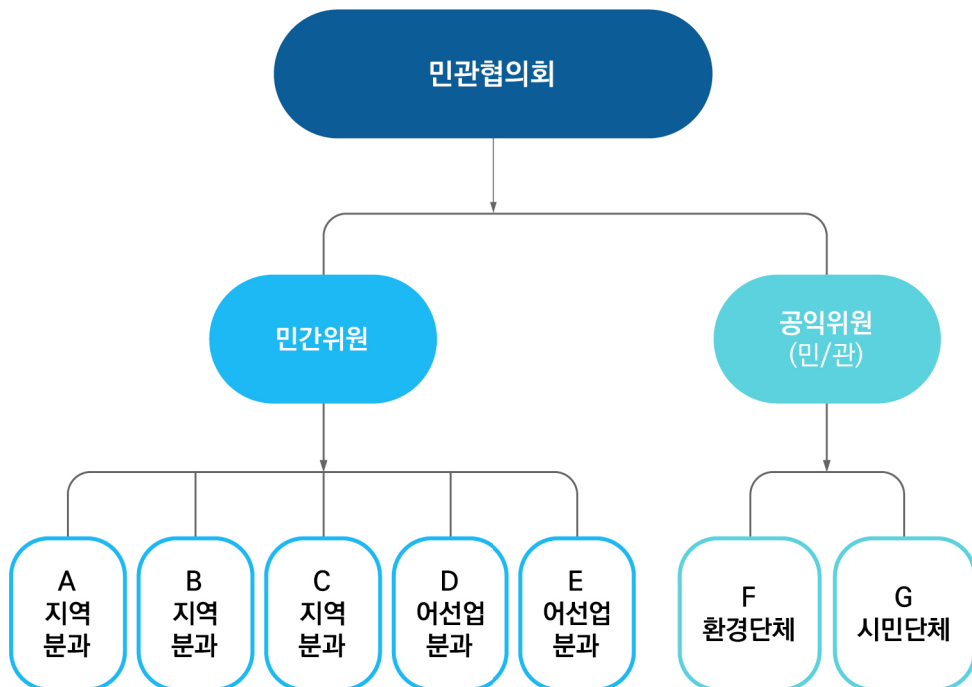
● 어업인그룹 외에도 지역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있다면 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해상풍력 사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지역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필요시 지자체가 추천하는 공익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제5항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 하위에 지역별 또는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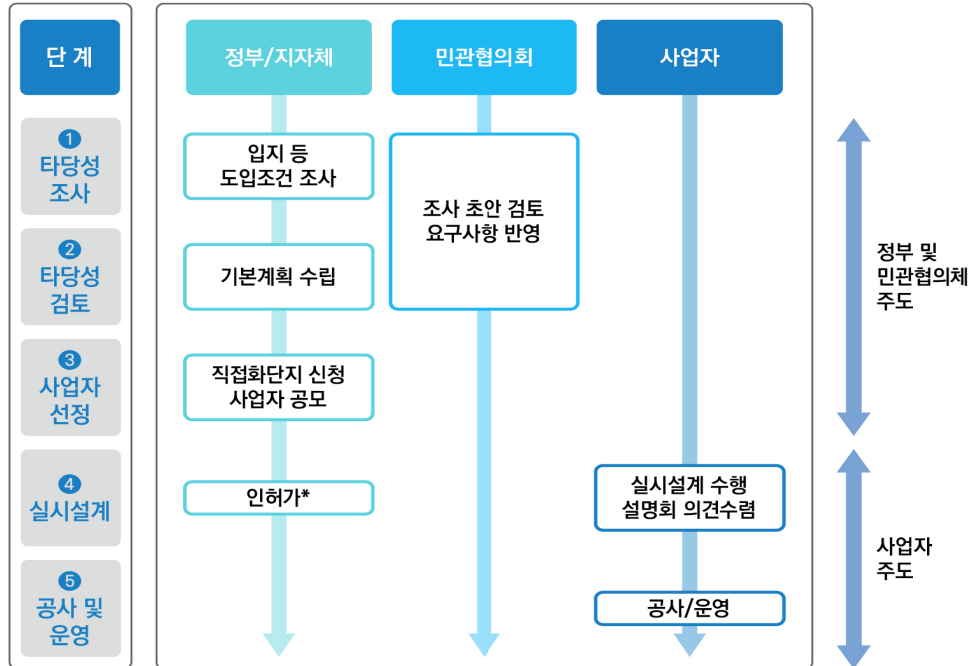
[민관협의회 구성 예시]



다. 어업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결국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자와 이야기가 잘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업자는 민간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 ⇒ 현재 구성하는 민간협회의 운영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계획과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초기 시점에는 사업자가 선정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지역 이해당사자가 원하는 사항이 담긴 단지 설계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시설계단계 인허가:공유수면 점사용허가(해상), 개발행위허가(육상), 공사계획인가
[공공주도 추진 시 주체별 세부 역할]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민관협회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 보상만이 아닌 이익공유, 상생 계획을 사업자 공모 조건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일들, 예컨대 사업예정 도서벽지의 여객선 추가 항로 마련, 대체어장 조성, 연륙교 추진 등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도 있으며 여객선 운항사 설립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상생계획을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사업자들이 지역에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하기 위해 경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어업인이 말하는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액 평가가 이루어지는 어업손실보상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 어업인 개개인의 손실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 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의 대원칙에 따라 사업자와의 협상은 민관협의회 이후 사업자가 정해진 후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사업자가 정해져 있으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가 집적화단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있으며(‘집적화단지 지침’ 제5조 제2항 제6호)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전체 위원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구성인원에 있어 민간위원과 민간 추천 공익위원 수의 합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 외부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선정되면 더 논의하기도 어렵고 방해만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 전문가는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닌데 왜 참여시켜야 합니까?

⇒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민간위원인 어업인분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때그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관협의회는 집적화단지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집적화단지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협의회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그 계획이 정말로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은 민관협의회의 몫입니다. 특히 해상풍력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대해 지자체가 작성한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가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 공익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간위원들의 검토과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어업인들도 어업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해상풍력으로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어업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 산업은 어업 외에도 연관된 산업 분야가 많고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어업인분들은 어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해상풍력의 기술, 제도, 환경 영향, 이익공유, 산업 파급효과 등 각 분야별로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아무래도 사업추진 의사가 강한 지자체나 사업자에게 의지하는 것은 실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국 민관협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려면, 어업인분들이 궁금한 점을 수시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줄 어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공익위원 구성의 취지는 좋지만, 우리 지역의 일을 논의 하는데 결정권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 ⇒ 공익위원 참여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사결정에 제약이 될까 우려된다면 공익위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공익위원 외에 별도로 자문위원단의 구성을 지자체에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제3항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과 별도로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적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에 따라 참여한 사람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마. 사실 민관협의회라고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어업인들을 동등하게 인정하는지 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 **협의회를 구성할 때부터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들이 있습니까?**

- ⇒ 하나의 대안은 협의회 위원장을 지자체 측에 단독으로 맡기는 것이 아닌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공동위원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 민간 측 공동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1인으로 선출하거나 또는 민간위원들이 신뢰하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아니라 공동위원장을 지자체와 민간이 나누어 맡으면, 협의체 운영의 키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의 역할과 부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에 그칠 뿐,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위원장은 안전의 선정, 회의 진행, 회의 결과정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정하면서 위원장을 공동체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을 할 경우, 회의 운영이나 의사진행 그리고 안전 상정을 위원장 간 반드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할 수 있어 어업인 측이 안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에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한편으로 민간위원들은 정부에서 준비한 안전만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적정성, 수산업 상생공존, 지역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스스로 안전으로 건의할 수 있는 역량과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2항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명 이상의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 가능하고, 민관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3.2. 민관협의회 운영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서 실제로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절에서는 효과적인 민관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민관협의회는 만들었는데 회의를 어떻게 운영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처음 민관협의회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에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면 다음 단계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관협의회’도 ‘민관협의회 운영규정’도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미 ‘집적화단지 지침’ 내에 기본적인 규정사항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집적화단지 지침’에는 없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 ‘집적화단지 지침’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가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집적화단지 지침’ 제5조의2 제1항 제4호).

-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은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만들수록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 서는 이에 대한 예시를 부록으로 제시해 드리니 지역 여건에 맞게 내용을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지역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을 만드려고 합니다.

● 누가 언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야합니까?

⇒ 민관협의회는 주로 지자체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됩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업인들이 안건을 만들고 민간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3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위원들도 지자체가 원하는 시점에 지자체가 준비한 안건만 수동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민간위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한 입지적정성, 수산업 상생 공존, 지역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에서 공론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3항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민관협의회에서 무엇에 대하여 어디까지 논의를 해야합니까?**

⇒ 공공주도 집적화단지 계획은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미 민간사업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집적화단지 설계도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들의 필요에 따라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단, 민관협의회는 직접적인 인허가권은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의 도구로서 민관협의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시에는 어업인 단체가 혹은 발전사업허가 시에는 지자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가능합니다.

● **위원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까?**

⇒ 민간협의회 위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지 그 권한을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에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민간위원이 타당성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해상풍력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에 정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언제 무엇을 논의했는지 기억이 안날 것 같습니다. 또 했던 얘기를 반복하거나 바꾸는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 민관협의회에서는 논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관협의회 방청 허용, 녹취록 및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특히 중요한 합의사항은 회의록에 남겨서 서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6항 실시기관은 민간협의회 개최시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민간협의회 회의결과 등 운영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보공개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민간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만들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려면 각종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우리 어민들은 참여하더라도, 조업 등 생계활동을 하려면 회의를 직접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 여기에서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계획하는 집적화단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가 실무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자체의 실무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연락, 회의 안건 등 자료 준비 및 사전 공유, 회의록 작성, 기타 민관협의회 운영 지원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우리 지자체는 해상풍력 담당 부서가 있더라도 규모가 작아서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 ⇒ 1차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에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달라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 예산을 확보해 지자체가 설립한 연구원이나 대학연구소 등 외부에 민관협의회 운영 실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외부의 공신력 있는 독립기관이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게 되면 지자체와 민간위원 간 소통 및 중재, 정보 공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우리 민관협의회는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다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회의가 잘 운영이 될지, 어영부영하다가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사업추진을 위한 거수기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운영방법이 있습니까?

- ⇒ 민관협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분과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위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회의는 한정된 시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세부 방안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일정과 목표 설정: 기한과 목표를 설정하면 그 다음 단계인 세부 안건을 자연스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사전 협의:** 본 회의 개최 전에 자료 공유를 통해 각 분과별, 민간위원별 사전 논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 본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상설 채널 마련:** 민관협의회 구성원 중 특히 민간위원은 평소 어업활동 등 생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관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사이에도 민간위원들간에 충분한 소통을 위하여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간 간사제도 도입, 모바일 채널(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운영 예산 마련:** 시간을 내서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에 어업인분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전후로 어촌계원 또는 단체 회원들에게 공지하거나 결과를 공유하는 일도 추가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민관협의회는 운영비용이 지자체 등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기에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시 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추후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령 금액도 공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학습 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을 위촉하더라도, 민관협의회 안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위원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 생업이 바쁘더라도 시간과 기회를 내서 안전과 관련한 기초적인 현황과 지식들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협중앙회에 관련 자료나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3. 협의 역량 강화

“민관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알 것 같은데,
개별 안건들을 논의할 때는 모르는 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 절에서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역량을 높일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 공익위원으로 전문가가 있는데 꼭 우리 어업인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 네, 말씀하신대로 민관협의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정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럼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 먼저 해상풍력 기술, 정책,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의 표는 해상풍력 관련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개별 주제들과 내용입니다. 제도와 기술에 대한 기초 사항부터 향후 이해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영향과 이익공유 방안들이 있습니다.

[역량 강화에 필요한 분야별 주제 예시]

분야	주제
발전사업 기초	전력 발전 및 송전망 체계, 발전 용량 및 발전량 개념
풍력산업 이해	육·해상 풍력산업의 동향과 전망, 산업 파급효과
풍력기술 기초 원리	풍력발전기의 핵심 기술과 공법, 최근 개발 동향
풍력정책 및 인허가	풍력발전 추진 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집적화단지의 개념
이익공유와 상생	해상풍력사업을 통한 지역 이익공유 및 상생 제도와 실제 사례
해상풍력의 환경영향	해상풍력사업 도입 시 예상될 수 있는 해양환경 영향
사업자 입찰 계획	해상풍력 사업자 입찰을 위한 공모절차와 평가기준

나. 무엇을 알아야 할지 파악은 했는데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 봐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우리 어업인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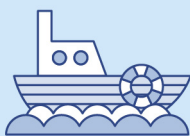
- ⇒ 어업인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한번에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관련 교육, 현장견학, 세미나, 자료제공 등을 수시로 요청하거나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 지자체 외에도 어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수협이나 수협중앙회 담당 부서에 관련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관련한 전문가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4

부록

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2.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예시)



부록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2.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0호, 2024. 2. 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보급과), 044-203-538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공고되는 구역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계획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총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
5. “사업시행자”란 실시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 ① 집적화단지 입지는 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부가 구축한 풍력 입지 정보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인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를 발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는 예산 또는 관할 지방공기업의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화단지를 위한 입지 및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전원(電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④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단지 내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 용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⑤ 집적화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발전설비, 케이블 등)
2. 변전시설(변전소 등)
3. 운영시설(모니터링 센터 등) 및 부대시설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민관협의회 구성) ① 실시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과학성,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에너지산업, 환경, 해양수산 등 사업계획 관련 부서가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3. 공익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4. 공익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절반씩 추천한다.
5. 민관협의회는 운영과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2호

의 민간위원 수 및 제4호의 민간위원이 추천한 공익위원 수의 합이 전체 위원
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6. 사업시행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수인 경우 전체위원
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5호에 따른 과반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과 별도로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적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의 참
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에 따라 참여한 사람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④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실시기관은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
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성
한다.

1.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
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2.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⑤ 민관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에 제5조의2제1항의 협의, 제11조의 사업시행자
공모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거나, 해당 논
의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5조의2 (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 연계방안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이하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라 한다)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
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명 이상의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 가능하고, 민관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및 집적화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위원을 민관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 하위에 지역별 또는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⑥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 개최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민관협의회 회의결과 등 운영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실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보공개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민관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실시기관은 민관협회의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업 계획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사업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청회 등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개요
2. 사업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4.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회는 해당 집적화단지가 위치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에게 해당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개제할 것
2. 주관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④ 실시기관은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① 실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후보입지에 대한 지형, 풍향, 조류 등 예비조사

시행결과 등 포함)

2. 집적화단지 개발 및 발전사업 시행방법
 3. 토지·공유수면 등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진 계획
 4. 전력계통 연계방안(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 포함)
 5. 주요기반 시설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6.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 계획
 7.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연계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주민 이익공유 계획
 8. 민관협의회, 사전입지컨설팅, 주민 등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9. 위 각 호와 관련된 실시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 이행 계획
-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지방공기업 또는 발전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은 실시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①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
2. 제6조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청취
3.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및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4. 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지침」, 산림청의 「국유림 내 육상풍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의 「해양입지컨설팅 제도 운영지침」등에 따른 사전입지컨설팅

제9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① 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제16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2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20일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때 제10조제4항에 따른 우대 가중치의 상한선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가중치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집적화단지 내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별로 각각 평가하여 우대 가중치의 상한선을 부여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최종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 심의,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 ③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등 20인 내외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의 회의를 위해 소집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④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위원단 중에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소집하고, 소집위원 중 최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⑤ 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하고, 최종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계획을 심의회에 상정한다.
 2. 심의·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별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기타 평가·심의·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대상(이하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평가대상과 이권 상의 관계가 있는 경우
 - 나. 평가대상의 실시기관과 상호평가 관계일 경우
 - 다. 평가대상의 실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2. 평가대상에 관하여 자문, 검토 등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평가, 심의, 자문 등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⑦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 심의, 자문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집적화단지 지정·공고) ① 장관은 제9조제6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결과(우대 가중치 상한선을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을 하였을 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서 시행하는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급의무화 제도 지침 제7조에 따른 우대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우대 가중치는 발전사업별로 준공 시점에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확정하며, 세부 절차는 공급의무화 제도 지침에 따른다.

⑤ 삭제

제11조 (사업의 시행) ①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괄한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③ 실시기관은 사업시행자 공모시 사업 추진 능력,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모 실시 전 공모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실시기관은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8조의 신청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를 완료하였을 경우, 민관협회의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제8조제2항제2호의 주민등의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 평가·심의 등의 절차는 제9조와 제9조의2에 따른다.

③ 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 또는 실시기관 또는 참여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른 계측기 유효지역 내에서 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발전설비별 용량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5. 총사업비를 감액 또는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제9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장관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등)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기관의 변경 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실시기관은 해제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연기를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16조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9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해제를 연기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중요한 사정으로 집적화단지의 목적을 명백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 이행 실적 확인 및 실태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사업계획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실시기관의 변경 또는 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장관은 그 내용을 실시기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통보 받은 즉시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시계획의 수립) ① 실시기관이 집적화단지 내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단지 내 각각의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실태조사 등) ①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행현황 및 차년도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년말까지 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단, 집적화단지 지정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이 집적화단지 사업에 대하여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신청을 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이행 실적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집적화단지에서 1개 이상의 사업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등 사업계획의 일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의 이행실적 확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적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실적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의 인정 여부 및 우대 가중치, 제13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여부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검토하고, 이행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심의회 심의를 통해 제10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장관은 집적화단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집적화단지 입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평가·심의 등
3.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정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칙 <제2020-187호, 2020. 11. 1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9호, 2021. 1. 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9호, 2021. 12. 16.>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8조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신청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한 실시기관의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협의하여 민관협회의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24-30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기준

[별표 2] 지자체 주도형 REC 우대 가중치 부여 기준

[별표 1]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기준 (제9조제2항 관련)

신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기준(안)

년 월 일, 평가위원 : ○ ○ ○ (서 명)

분 야	세부평가 항목	배 점	점 수
사업의 실시능력 (30)	○ 지자체 역할 및 사업계획 이행 계획 * 지자체 역할 · 이행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10	
	○ 토지·공유수면 이용계획 및 인허가 계획 * 입지이용계획 및 관계 행정기관(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등) 인허가 협의 구체성 및 실현성	10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20)	○ 전력계통 확보계획의 적절성 * 전력계통 용량 확보 및 연계방안의 적절성	10	
	○ 주요시설 배치 · 시공 · 운용계획 * 유지보수, 위험대비 등 시행능력의 적절성	10	
수용성· 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30)	○ 지역주민 등 지역수용성 확보계획 * 수용성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15	
	○ 환경성 사전 검증계획 * 환경성 검증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성	15	
이익공유 계획의 적정성 (20)	○ 지자체 주도형 사업수익 활용방안 ○ 주민 이익공유 계획, 신재생 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 기여 정도	20	
합 계		100	

[별표 2]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 기준 (제9조제3항 관련)

지자체 주도형 REC 우대 가중치 부여 기준(안)

평가 항목	가중치
지역주민·어업인 등 수용성 확보 (민간사업자 입지발굴 사업 포함) ※ 집적화단지 기본조건,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 중점 평가	0.04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자체예산으로 풍황, 규제 등 확인·검토)	0.02
사업시행자 공모 여부 (사업자를 공모했거나 공모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단, 공모 조건은 공모 전에 산업부와 협의하여야 함	0.01
사업기간 * 발전원별 기준 기간(최초발전사업허가일 ~ 설비확인 신청일)보다 빠른 경우 0.03, 같은 경우 0.02, 지연시 0.01 * 발전원별 기준 기간은 발전원별 표준공기를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0.01 ~ 0.03
합 계	최대 0.10

부록2.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예시)

○○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예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민관협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시에 「○○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후 협의한다.

1.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 연계방안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공존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명과 민간측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각 1명씩 선출하며 민관협의회를 각자

대표한다. 정부측 위원장은 ○○시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측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④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관련 부서장
2. 해상풍력 사업·해양·수산·환경 관련 공무원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관계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사업예정해역 인근 주민대표
3.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어업인들이 소속된 수협 조합장
4.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어업인들로 구성된 단체의 장

⑥ 공익위원은 해상풍력 사업분야·갈등조정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정부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2. 민간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정부위원 및 제4조제5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 ① 위원은 회의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 등 회의참여자(이하 “참여자”)는 누구든지 회의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또는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측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원활한 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측 위원장과 정부측 위원장이 각각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의안은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측 위원장이 협의를 거친 후 해당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상정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 시 의안 상정 전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

- ② 정부위원의 간사는 ○○시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간사는 민간측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 ③ 정부측 간사와 민간측 간사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추진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측 위원장을 각각 보좌한다.
- ④ 정부측 간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차기 회의 전 전차회의록에 대한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참석자
2. 상정된 의안 및 논의 또는 회의 결과 등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 하위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각 위원장의 상호 협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논의 내용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장의 협의하에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전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의 협의하에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다만, 출석한 위원장이 1명인 경우에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회의 공개) 회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

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의사결정방법)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결은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배석) ① 협의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배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배석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은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협의결과) ① 회의를 통해 협의된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적 지원) 시는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회 및 분과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배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어업인해설서

발행일 2024년 2월
발행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양식지원부
감수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 조공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전화 02-2240-3337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